



제417회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87, 220049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 요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II. 검토의견	3
1.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3
2.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설립	11
※ 참고자료	15

I. 개 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6. 14.

(3) 회부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6. 14.

(3) 회부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 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 등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 개정안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만 17세 이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이하 “소년소녀병”이라 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교육 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9.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6·25참전 소년소녀병(이하 “소년소녀병”이라 한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u>

현행	개정안
10. ~ 18. (생략) ② ~ ⑥ (생략)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u>재일학도의용군인</u>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4. (생략) ② ~ ⑤ (생략)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u>사람</u>	<u>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당시 기준)의 사람</u> 10.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재일학도의용군인, 소년소녀 병</u>----- ----- 3.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 ----- ----- ----- -----. 1. ----- ----- ----- -----<u>사람,</u>

현행	개정안
<u>및 재일학도의용군인</u>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u>재일학도의용군인</u>,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u>재일학도의용군인</u>,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 4. (생략)	<u>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소년소녀병</u>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 ----- -----. 1. ----- -----<u>재일학도의용군인</u>, <u>소년소녀병</u>-----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 ----- ----- -----. 1. ----- -----<u>재일학도의용군인</u>, <u>소년소녀병</u>----- ----- ----- 2.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u>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u> ②·③ (생략) 제42조(진료) ① ~ ⑥ (생략)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2. <u>재일학도의용군인</u> 3.·4. (생략) ⑧ (생략)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	5. ----- ----- ----- ----- -----<u>재일학도의용군인·소년소녀병의 자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진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소년소녀병</u> 3.·4.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

현행	개정안
경, 공상군경, <u>4·19혁명부상자</u> ,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 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철구를 지급한다.	----- <u>4·19혁명부상자</u> , <u>소년소녀병</u> ----- ----- ----- ----- -----.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 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공상군 경, <u>4·19혁명부상자</u> , 공상공무 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 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 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 한다.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 ----- -- <u>4·19혁명부상자</u> , <u>소년소녀병</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소년소녀병이 신체적 희생을 입은 경우에는 전몰·전상
군경과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고,¹⁾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
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
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명예수당(2024년 기준 월 42만원) 지급, 진료비 감면(90%), 호국원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음.²⁾

< 현행법에 따른 소년소녀병 예우 및 지원 현황 >

구 분			예우 및 지원사항
소년 소녀병	신체적 희생 없는 경우	참전 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420천원)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90%), 국립호국원 안장
	전사하거나 다친 경우	전몰군경 전상군경	· 본인에게 보상금 지급 (상이등급 1~7급, 608천원~9,600천원) ·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585천원~2,249천원) ·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신체적 희생이 있는 소년소녀병 뿐만 아니라 신체적 희생이 없는 소년소녀병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도 현행 법상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³⁾⁴⁾ 신체적 희생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2) 「참전유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 마. (생략)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8. (생략)

이 없는 소년소녀병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별도의 지원을 함으로써 상호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어린 나이로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공헌이 큰 것은 사실⁵⁾이나 당시 6·25전쟁 참전자는 소년소녀병을 비롯하여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국민방위군, 향토방위대원, 참전여성, 동원 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이 있어, 소년소녀병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둘째,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소년소녀병은 본인(생존자) 9,113명, 배우자(생존자 및 사망자) 29,739명으로,⁶⁾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4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음.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사람은 제외한다)

4)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상금(2024년 기준 월 161만 2천원) 및 수당,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음

5) 6·25참전 소년소녀병은 대다수가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1·4후퇴를 전후한 5~6개월 사이 징집되어 전투를 치렀으며,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징집으로 인하여 면학의 기회를 잃게 됨.

6) 징집 또는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18세 미만’ 모든 6·25참전유공자를 기준으로 인원을 추계함.

- 셋째,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90호, 2024. 6. 14.)이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제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⁷⁾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년소녀병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지원할 경우 학도의용군 등 다른 비슷한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원 마련 방안의 필요성 및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과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어린 나이 강제 징집에 따른 피해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가 아닌 보상 또는 위로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방부 등에서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개정안대로 소년소녀병만을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 별도로 보상할 경우 참전자를 신분·나이·복무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게 되고, 이는 유사한 계층의 형평성 보장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7)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방부 의견 :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6·25전쟁 당시 소년병 징집은 적법한 조치로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하여 참전하여 희생한 헌신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징집 이외 자원입대한 소년병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설립(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소년소녀병을 회원으로 하는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u>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u>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u> ----- ----- ----- ----- ----- ----- ----- ----- ----- ----- -----.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	제3조(회원) ----- -----

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 9. (생 략) <u><신 설></u>	-----. 1. ~ 9. (현행과 같음) <u>10.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u> <u>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u> <u>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u> <u>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u> <u>사람</u>
--	--

□ 개정안은 강대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의결이 되었음을 가정하여 단체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법」 제18조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고,⁸⁾ 해당 단체에는 신분별·계급별·군별 등에 상관 없이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참전유공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 중에 있음.

8) 「참전유공자법」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25참전소년소녀병도 6·25참전유공자이므로 해당 유공자회를 통하여 상호 간 상부상조 및 자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개별적인 소년소녀병전우회를 통해 소년소녀병의 권익을 보다 직접적·집중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6·25참전 관련 신규 단체 설립은 기존에 관련 임의 단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이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설립되었는 바, 그 설립 연혁 및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법정 단체화 할 경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내 다양한 하위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셋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동일 성격의 단체에 대한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신설되는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기존

예산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중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별도의 공법단체로 인정할 경우, 추가로 신분별·계급별·군별 등 다양한 형태의 6·25참전단체 인정 요구가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기획재정부는 동일 성격의 단체에 대한 예산 중복지원이 우려되고, 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이 93세로 최근 4개년 동안 회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대표성을 가지는 1개 조직 외 추가로 단체를 지정하여 분할 지정할 실익이 적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⁹⁾ 중 ‘국가보훈처장’은 2023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바, 그에 맞추어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12

9) 개정안 부칙 제2조(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을 대표하는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1

6.25참전 소년·소녀병 현황 및 소요예산¹⁰⁾

< 징집 또는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18세 미만' 모든 6.25참전유공자 인원추계 >

□ 입대일 기준 18세 미만 6.25참전등록자 현황

(‘24. 6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생존자		사망자		합 계	
	본인	배우자 (추정포함)	본인	배우자 (추정포함)	본인	배우자 (추정포함)
일반 참전유공자	7,165	5,166	25,384	18,302	32,549	23,468
국가유공자	1,948	1,059	14,891	5,212	16,839	6,271
합계	9,113	6,225	40,275	23,514	49,388	29,739

※ (일반 참전유공자 배우자 추정) 무공수훈자 배우자 생존율 본인의 72.1% 적용

□ 추계 예산

○ 예산규모: 연 평균 **5,46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평균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본인	보훈급여금	116,331	581,654	130,562	123,017	115,929	109,231	102,915
	의료지원	398	1,991	455	426	397	370	346
	보철구지원	9,117	45,586	10,647	9,823	9,061	8,353	7,702
	부양가족수당	4,846	24,232	5,698	5,236	4,812	4,422	4,064
소 계		130,693	653,466	147,362	138,502	130,199	122,376	115,027
유족 (배우자)	보훈급여금	415,438	2,077,189	452,907	433,344	414,646	396,738	379,554
	의료지원	319	1,593	316	316	317	320	324
	취업지원	15.4	77	15.4	15.4	15.4	15.4	15.4
소 계		415,772	2,078,859	453,238	433,675	414,978	397,073	379,893
합 계		546,465	2,732,325	600,600	572,177	545,177	519,449	494,920

※ 보상금 단가: 재일학도의용군 수준('24년 기준, 본인 6급2항 161.2만원, 유족 5급 168.1만원) 및 일반 참전 유공자 인원(7,165명)을 기준으로 연 4.1%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추계함.

10) 자료: 국가보훈부

□ 징집 관련 규정(국방부 자료)

○ 소년·소녀병 징집 근거 규정[6·25 당시 징집근거 법령(국방부)]

- 병역법의 징집 연령은 만 20세~37세로 규정
- 소년·소녀병에 대한 징집은 “인적자원”을 징용대상으로 규정한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과 만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향토방위 의무를 부과한 「비상시 향토방위령」 등에 따라 이루어짐

관 련 법	발령(개정)	대상 연령	비 고
병역임시조치령 (대통령령 제52호)	49. 01. 20	만 17세~28세	병역법 공포 시행 이전 한시적 법령
병역법 제정 (제23조, 54조)	49. 08. 06	만 20세~37세	
비상시 향토방위령 제7호 (대통령 긴급명령)	50. 07. 22	만 14세 이상	향토방위 의무 부과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 (대통령 긴급명령 6호)	50. 07. 26	규정 없음	징용대상에 인적자원 명시
국민방위군설치법	50. 12. 21	만 17세~40세	국민방위군 편입
지원병령 (대통령령 제771호)	53. 04. 08	만 17세~55세	남녀 공히 해당
전시근로동원법	53. 06. 03	만 17세~40세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를 위해 국민근로 동원
병역법(17조, 24조)	57. 08. 15	만 20세~35세	

□ 아동 권리 보호

- 국제적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1924년 채택한 ‘제네바선언’에는 징병에 관련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 제 1조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 38조에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은 연장자 순으로 징병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발의 현황

○ (17~20대) 법안 및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형평성 문제, 재정여건 등 이유로 폐기

○ 제21대 국회 발의내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대식의원, '20.6.24.)
 - * 참전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취업, 교육, 대부, 의료지원 등 실시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대식의원, '20.6.24.)
 - * 국가유공자 단체에 소년소녀병을 회원으로 하는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추가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강대식의원, '20.6.15.)
-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임병헌의원, '23.3.27.)
 - *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일시금) 지급

참고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08.6) 및 현재 각하결정('15.10)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주문 내용('08. 6. 23)

- 신청인 : 6·25참전소년소녀지원병전우회(회장 박태승)
- 피신청인 : 국방부, 보훈처
- 신청내용 : 6·25참전소년병에 대한 실체를 확인·인정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지급 등 적절한 보상과 예우 요망
- 의결내용 : (국방부) 소년지원병의 실체를 조사·확인하고, 이중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조치 강구
(보훈처) 소년지원병의 위령비, 참전기념비 등의 현충시설 건립지원, 전사자 위패 봉안(보훈처, 국방부)

☞ 연금지급 요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반대의견

- 연금지급은 국민세금으로 예산에서 일생 지급하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현행 신체희생 전제)이 적용되어야 함
-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일본의 허가없이 지원·참전 후 귀환이 거부되어 가족과 생이별하고 국내 단신정착 등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사회·경제적 희생에 대한 예우와 정착지원 차원이므로 형평성에 위배된 것은 아님
- 참전유공자로서 이미 국가에서 공훈을 인정하는 바, 신체희생이 아닌 공헌을 이유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집단(KELO부대<특전사 전신부대>, 국민방위군, 백골병단, 반공유격대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각하결정('15.10.21.)

- 헌법에 소년병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위임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입법부는 국가배상법과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법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각하 결정
- 다만, 피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5**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설립 경과**

□ '00.8.8. 재향군인회에 6·25 관련 임의단체 통합 의뢰

- 6.25관련 『창군 및 6.25참전동지회』 등 총 21개 임의단체 난립
- 기타 임의단체 29개 지역에서 활동

□ '00.8.17. 6·25참전 관련 4개 단체 대표 통합에 합의

단체명	대표자
창군 및 6·25참전동지회	이춘경
한국전쟁참전자회	윤영모
6·25참전용사회	이교덕
육해공군6·25참전동지회	강낙희

□ '00.9.21. 4개 단체 발전적 해체 및 통합

- 이후 참전경찰, 철도공무원, 학도병, 유격대 등을 통합

□ '01.3.28. 통합 총회 개최

□ '01.5.16. 사단법인 설립 허가(사단법인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 '04.3.26. 명칭변경(사단법인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08.9.29.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정

- * '08. 2월 국가유공자에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9.3.7. 공법단체로 전환

- * '09.1월 참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6·25참전유공자회 설립근거 명시)

참고6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설립 시 소요 예산¹¹⁾

○ 상세 산출식 및 산출근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현재 공법단체 6.25참전유공자회 기준으로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비 용 추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6·25 참전 유공 자회	사업비	호국보훈의달 위로행사 등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운영비	사무비		81,692	81,692	81,692	81,692	81,692
		중앙회 활동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지부 운영비(594×17개×12월)		121,176	121,176	121,176	121,176	121,176
		지회 운영비 (205×231개×12월)		568,260	568,260	568,260	568,260	568,260
		소 계		841,128	841,128	841,128	841,128	841,128
	인건비	중앙회 (2024년 기준)	회장(2,153×12)	26,611	27,409	28,232	29,079	29,951
			부회장(1,879×12)	23,224	23,921	24,639	25,378	26,139
			감사(1,879×12)	23,224	23,921	24,639	25,378	26,139
			사무총장(1,831×12)	22,631	23,310	24,009	24,730	25,472
			국장(4명×1,772×12)	87,608	90,236	92,943	95,731	98,603
			과장(4명×1,679×12)	83,010	85,500	88,065	90,707	93,428
			사원(8명×1,650×12)	163,152	168,047	173,088	178,281	183,629
			운전원 (1명× 1,760×12)	21,754	22,406	23,078	23,771	24,484
		지부 (2024년 기준)	지부장 (17명×1,714×12)	360,146	370,950	382,079	393,541	405,347
			사무국장 (17명×1,668×12)	350,480	360,995	371,824	382,979	394,469
			과장(16명×1,656×12)	327,491	337,315	347,435	357,858	368,594
			사원(1명×1,650×12)	20,394	21,006	21,636	22,285	22,954
		퇴직충당금		117,836	121,371	125,012	128,763	132,626
		보험료		93,603	96,411	99,304	102,283	105,351
		소 계		1,721,164	1,772,799	1,825,983	1,880,762	1,937,185
		합 계			2,672,292	2,723,927	2,777,111	2,831,890

※인건비는 '24년 기준으로 3% 증가율 적용

11) 자료: 국가보훈부